

석·박사통합과정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가톨릭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제가 목에 따른 부산가톨릭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석·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 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통합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선발인원) 통합과정의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내로 한다.

제5조(지원자격) 통합과정 선발유형은 통합 유형1, 통합 유형2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유형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취득예정자 포함)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유형2-1: 본 대학교 석사과정 재학생 중 2학기(편입생 인정학기 포함)를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과정 전공분야와 통합과정 지원 전공분야가 동일한 사람
3. 유형2-2: 본 대학교 석사과정 재학생 중 3학기(편입생 인정학기 포함)를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과정 전공분야와 통합과정 지원 전공분야가 동일한 사람

제6조(전형방법) 통합과정 선발방법 및 전형방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 이상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통합과정 재학연한은 7년으로 한다.

제8조(휴학기간) ① 통합과정의 휴학기간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유형2에 선발된 자는 석사과정에서 휴학한 기간은 통합과정 휴학기간에 포함한다.

제9조(이수학점) 통합과정의 이수학점은 54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과정 유형2로 선발된 학생이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기와 학점은 통합과정 이수학과 이수학점으로 모두 인정한다.

제10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통합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입학일로부터 9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중도 포기자 또는 탈락자에 대한 조치) ① 중도포기 자는 스스로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으로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포기를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도탈락 학생은 학과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학생으로 매 학기 학적변동 기간 내에 해당 학과장이 중도탈락 대상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통합과정 수료 후 박사학위 포기자는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석사학위 취득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칙 및 대학원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 학생 중 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제12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통합과정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다.

제13조(박사학위논문 제출) 통합과정에서 6개 학기 이상 등록 후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박사학위 수여) 학칙 제63조의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5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지원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제5조의 규정은 2022학년도 석사과정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